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4. . (제 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에 대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용방법 및 자격(안 제43조 제1항 신설)

-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
-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등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 제한

나. 결격사유(안 제43조 제2항 신설)

-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 제한

다. 임기(안 제43조 제3항 신설)

- 2년, 1년 단위로 연임

라. 해임 등 징계(안 제43조 제4항 신설)

- 해임 등 징계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업무(안 제43조 제5항 신설)

- 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실시

바. 자료 등의 요구(안 제43조 제6항 신설)

-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및 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석,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 현장조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직원 및 부서의 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사. 요구에 대한 거부시 조치(안 제43조 제7항 신설)

-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아. 업무 제한(안 제43조 제8항 신설)

-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준법감시관) ① 공사가 법 제26조의3에 의한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 공사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학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다.

1.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라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과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라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준법감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준법감시관의 해임 등 징계에 대해서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준법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2.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3.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조사 결과 공개
4. 기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와 부패 방지교육 등의 실시

⑥ 준법감시관은 제5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 임직원과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문답서 또는 진술서 등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등을 포함한다)등의 제출
3. 조사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4.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⑦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제6항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과 부서의 장에 대한 징계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⑧ 공사는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 <신설>	제43조(준법감시관) ① 공사가 법 제26조의3에 의한 준법감시관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5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학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준법감시관
이 될 수 없다.

1.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
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
(라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
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
(라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

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
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준법감시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
하여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④ 준법감시관의 해임 등 징계에
대해서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준법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2.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3.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4. 기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
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등의 실시

⑥ 준법감시관은 제5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에게 출석
요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
구할 수 있으며, 공사 임직원과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문답서 또는 진술서 등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전
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등을
포함한다)등의 제출
 3. 조사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4.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⑦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
과 부서의 장이 제6항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임직원과 부서의 장에 대한
징계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⑧ 공사는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0